

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. 10. 13 선고 2022가단537 판결 [사해행위취소 등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9. 1.

판 결 선 고 2022. 10. 13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관하여,
가. 피고와 C 사이에 2020. 2. 18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C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20. 2. 181) . 접수 제11269호로 마친
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, 제1항)

판사 이동호

별지

- 1) 소장 청구취지 기재 “17”은 오기로 보인다.